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와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절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9조의2, 제14조, 제82조).
- 나.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
- 다.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 라.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및 각하 등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제52조의3)
-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2
조의2).

3.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8-629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2월 30일

발의의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9조의2, 제14조, 제82조).
- 나.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
- 다.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 라.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및 각하 등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제52조의3)
-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2조의2).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한다.

제2조 중 “임기초”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중 “법 제70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 중 “미치지”를 “마치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제외에 미치거”를 “의제와 관련이 없거”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2항 중 “약간인”을 “2인 이하”로 한다.

제45조제1항제9호 중 “내용”을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사에 관한 사항

11. 표결수

12. 거수, 기록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투표자 및 찬반, 기권
의원 성명

제47조의 제목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을 “(자구의 바로잡음과 이의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에 임시회의록이 등록된 후 1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정정”을 각각 “바로잡음”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를 “공개”로 한다.

-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중 “위원의”를 “의원의”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5조의 제목 “(위원회의 의사·의결종족수)”를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로 한다.

제5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사에 관한 사항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예산안 등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74조제4호 중 “깍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주자

제80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깍연행위”를 “흡연행위”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전 지방의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4.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6.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83조제1항 전단 중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제5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5조(안건심의) ①·② (생략)

③ 본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직접 심사할 때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다.

④·⑤ (생략)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미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행과 같음)

② -----

----- 법 제72조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안건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발언의 계속) -----

----- 마
치지 -----

-----.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 의제와 관련이 없거 -----

-----.

②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④ (생략)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8. (생략)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신설>

12. ~ 14. (생략)

② (생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

② -----
---- 2인 이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 내용에 관한 사항

10. 의사에 관한 사항

11. 표결수

12. 거수, 기록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투표자 및 찬반, 기권 의원 성명

13. ~ 15. (현행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구의 바로잡음과 이의의 결정) ① -----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에 임시회의록이 등록된 후 10일 이내에 -----
---- 바로잡음-----

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⑤ (생략)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

----- . ----- .

② -----
----- 바로잡음 -----

----- .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 공개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신설>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종족수) ①·② (생략)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6. (생략)

7. 의사

8. ~ 11. (생략)

②·③ (생략)

제61조(예산안 등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
----- 위원의 -----
----.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종족수) ①·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의사에 관한 사항

8.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예산안 등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은 후 의장은 예산안과 기
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심사기간
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기금결산보고서
와 함께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
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
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
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

을 들은 후 의장은 예산안과 기
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심사기간
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단, 예결위원
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
로 심의할 수 있다.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기금결산보고서
와 함께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예결위원회의 설
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는 결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
의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
조-----

----- 심사 대상 의원

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 ③ (생략)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

② 심사 대상 의원-----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심사 대상 의원-----.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심사 대상 의원-----
-----.

② ----- 심사 대상 의원-----

심사 대상 의원-----
-----.

③ 심사 대상 의원-----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3. (생략)
- 4. 음식물의 섭취와 끼연
- 5.·6. (생략)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주기가 있는 자
- 3. 삭제
- 4. (생략)

②·③ (생략)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생략)
-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생략)
- 4. 음식물의 섭취나 끼연행위
- 5. ~ 8. (생략)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

-----.

- 1. ~ 3. (현행과 같음)
- 4. ----- 흡연
- 5.·6. (현행과 같음)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

- 1. (현행과 같음)
- 2. 음주자

- 4.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

- 1. (현행과 같음)
- <삭제>
- 3. (현행과 같음)
- 4. ----- 흡연행위
- 5. ~ 8.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 법 제98조-----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법

제95조-----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

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전 지방의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

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4.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6.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제5항의 본회의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 같은 조 제3항 -----

----- 3일 이내 -----
----- . 같은 조 제5항 -----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행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
----- 같
은 조 제3항-----

-----.

제85조의2(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13.] [법률 제18495호, 2021.10.19., 제정]

제11조(이의신청 등)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